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특정경제범죄자의 취업제한기업체 확대 등 〉

■ 용혜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789호)

2025. 4.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용해인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2024. 11. 22.
3. 회 부 일: 2024. 11. 2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이 법에서 규정한 범죄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일정기간 동안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이 제한됨.

그런데 특정기업 총수가 수감 중 본인이 지배주주이면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논란이 된 사례가 있음. 이에 따라 제한하는 취업 및 기업체의 범위를 확대하고 취업제한 기간에 형집행기간을 포함함으로써, 이른바 ‘옥중경영’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과 그 공범이 출자 또는 재직하는 기업체에까지 취업제한을 확대하고, 제한되는 ‘취업’에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한편, 징역형의 집행기간 및 집행유예기간 동안에도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4조).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개정안은 i)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함) 제14조제1항에 따라 일정한 범죄¹⁾를 저지른 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기업체(이하 “취업제한기업체”라 함)에 현행 규정의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²⁾ 외에 특정경제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하 “특정경제범죄자”라 함)이 출자하거나 재직하는 기업체를 추가하고(안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ii) ‘취업’의 범위에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등 사실상 취업한 경우”를 포함하도록 하여 취업이 제한되는 특정경제범죄자가 취업제한기업체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제

1)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5억원 이상 사기 등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제4조제2항(5억원 이상의 재산국외 도피죄), 제5조제4항(3천만원 이상 수수 등의 죄) 또는 제8조(사금융 알선 등의 죄)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

2)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공범**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자와 **관련된 기업체** 및 특정경제범죄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로 구체화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취업제한대상인 기관 및 기업체의 범위)

②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체로 한다. <개정 2019. 5. 7.>

1. 법 제3조·법 제4조제2항(미수범을 포함한다)·법 제5조제4항 또는 법 제8조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공범**(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응하여 법 제6조의 죄를 범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나 공범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가 **출자한 기업체**로서 그 출자한 금액의 합계액이 발행주식 또는 출자금의 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인 기업체
2. 법 제3조·법 제4조제2항(미수범을 포함한다) 법 제5조제4항 또는 법 제8조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공범**이 그 범행 당시 임원 또는 과장급 이상의 **간부직원으로 있었거나** 임원 또는 과장급 이상의 **간부직원으로 있는 기업체**
3. 법 제3조·법 제4조제2항(미수범을 포함한다)·법 제5조제4항 또는 법 제8조에 따라 **유죄판결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기업체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
4. 법 제3조·법 제5조제4항 및 법 제8조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제3자 또는 그 제3자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가 **출자한 기업체**로서 그 출자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1호에 규정된 기준 이상인 기업체
5. 제4호에 따른 제3자가 범죄행위 당시 임원 또는 과장급 이상의 **간부직원으로 있었거나** 임원 또는 과장급 이상의 **간부직원으로 있는 기업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체가 출자한 기업체로서 그 출자한 금액이 제1호에 규정된 기준 이상인 기업체

한하며(안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iii) 취업제한 기간에 징역형의 집행기간 및 집행유예기간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안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현행	개정안
제14조(일정 기간의 취업제한 및 인가·허가 금지 등) ① 제3조, 제4조제2항(미수범을 포함하 다), 제5조제4항 또는 제8조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금융 회사등,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 자한 기관 및 그 출연(出捐)이 나 보조를 받는 기관과 유죄판 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 이 있는 <u>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 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제14조(일정 기간의 취업제한 및 인가·허가 금지 등) ① ----- ----- ----- ----- ----- ----- ----- ----- ----- ----- <u>기업체 및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과 그 공범이 출자 또 는 재직하는 기업체에 취업(실 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등 사실상 취업한 경우를 포함하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u> ----- ----- -----.
1. <u>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u>	1. <u>징역형의 집행기간 및 징역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u>

현행	개정안
<u>된 날부터 5년</u> 2.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3. (생략) ② ~ ⑥ (생략)	<u>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u> 2.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및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3.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경제적·사회적 파급력이 큰 특정경제범죄자가 연평균 1,000여 명이 넘는 상황임에도,³⁾ 공범 등이 5% 이상 출자한 기업체, 재산상 이득을 취한 기업체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 등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현행법상으로는 특정경제범죄자 본인이 출자하거나 재직하는 기업체에 취업이 가능한 실정임.

특히, 기업집단의 총수가 특정경제범죄를 저질러 경제질서를 해치

3)

특정경제범죄자 취업제한 관련 연도별 유죄판결자 현황

(단위 : 명)

연도별 위반조항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11. 까지	평균
제3조 (사기, 공갈, 횡령·배임)	1,159	1,097	1,099	1,048	1,172	1,269	1,141
제4조제2항 (재산국외도피)	1	0	3	0	0	1	0.8
제5조제4항 (수재 등)	8	8	7	4	9	9	7.5
제8조 (사금융 알선 등)	3	1	2	0	0	3	1.5
합계	1,171	1,106	1,111	1,052	1,181	1,282	1,151

* 출처: 법무부 제출 자료

거나 기업집단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취업제한 기업체가 아니면 사실상 계속하여 기업집단을 경영할 수 있어서, 취업제한을 통해 특정경제범죄자를 제재하고 경제범죄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취지⁴⁾와 맞지 않는 측면이 있는바, 특정경제범죄자나 그 공범이 출자하거나 재직하는 기업체에 취업하거나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경제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고 경제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인정됨.

2. 개정안에 대한 검토

가. 현행 취업제한 제도 개요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제1항은 특정경제범죄자가 금융회사등,⁵⁾

4) “유죄판결된 범죄사실과 밀접하게 관련된 기업체에 대한 취업을 제한함으로써 중요 경제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고 이를 통하여 건전한 경제질서를 확립하며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다271282 판결)

5)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및 「은행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은행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증권금융회사 및 종합금융회사

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농협은행

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수협은행

바.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사.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아.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

자.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차.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카.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기관과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 3. (생략)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및 그 출연(出捐)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과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은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의 범위를 공범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한 제3자 또는 그들의 직계 존·비속 등이 5% 이상 출자한 기업체(같은 항 제1호·제4호), 공범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한 제3자가 범행 당시 임원 또는 과장급 이상 간부 직원으로 있었거나 있는 기업체(같은 항 제2호·제5호), 재산상 이득을 취한 기업체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업체가 5% 이상 출자한 기업체(제6호)로 구체화하고 있음.

<현행 특정경제범죄법 취업제한제도 개요>

취업제한 적용 범죄	5억원 이상 사기·공갈·횡령·배임·재산국외도피, 3천만원 이상 수수, 사금융 알선 등	
취업제한 기간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종료된 날부터 2년	
	징역형의 선고유예기간	
취업제한 범위	금융회사등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특정경제범죄법 제2조제1호)

국가·지방자치단체 출자 기관 및 그 출 연 또는 보조를 받 는 기관	특정경제범죄법 시행령 별표 1부터 별표 3 까지에서 규정한 기관*
유죄 판결된 범죄행 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 (특정경제범죄법 시 행령 제10조제2항에 서 구체적으로 규 정)	공범, 재산상 이득을 취한 제3자 또는 그들 의 직계 존·비속 등의 출자금이 5% 이상 인 기업체(제1호·제4호)
	공범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한 제3자가 범 행 당시 임원 또는 과장급 이상 간부직원으로 있었거나 있는 기업체(제2호·제5호)
	재산상 이득을 취한 기업체 또는 재산상 손 해를 입은 기업체(제3호)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기업체의 출자금이 5% 이상인 기업체(제6호)

* 별표 1: 한국조폐공사·한국전력공사 등 16개 기관

별표 2: 서울교통공사·부산광역시의료원 등 27개 기관

별표 3: 국방과학연구소·한국개발연구원 등 52개 기관

나. 외국 입법례

독일 형법은 제70조에 따라 보안처분의 일종인 법원의 “직업금지명령”을 통하여 경제사범이 일정기간 그의 범죄행위와 관련된 직업 또는 영업을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만, 우리 특정경제범죄법과 달리 경제사범의 취업이 제한되는 기업체,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음.⁶⁾

영국은 이사 자격 제한법(1986년)에 따라 경쟁법 위반, 부당 거래, 회사와 관련한 비위행위 등을 이유로 법원의 명령 등에 의하여 이사의 자격이 제한될 수 있고,⁷⁾ 이사의 자격 제한 명령 등이 있는

6) 「독일 형법」

제70조(직업금지명령) ① 자신의 직업이나 영업을 악용하여 저지른 위법행위나 자신의 직업이나 영업과 관련된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여 저지른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거나 단지 책임무능력을 입증했거나 배제할 수 없어서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행위자와 행위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직업, 직업 일부, 영업 또는 영업 일부의 계속 수행 중 규정된 유형의 현저한 위법행위를 범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행위자에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직업, 직업 일부, 영업 또는 영업 일부의 수행을 금지할 수 있다. 이때 법정 상한이 행위자로부터 예상되는 위험을 방지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예상되는 경우 영구적으로 직업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② 행위자에게 직업, 직업 일부, 영업 또는 영업 일부의 수행이 임시 금지된 경우(「형사소송법」 제132a조) 금지기간의 하한은 임시 직업금지의 유효기간만큼 단축된다. 다만, 이는 3개월 미만이어서는 아니 된다.

③ 직업금지가 유효한 동안 행위자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직업, 직업 일부, 영업 또는 영업 일부를 수행하거나 자신을 위하여 그 지시를 받는 사람을 통해 이를 수행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④ 직업금지는 판결의 확정과 함께 효력을 갖는다. 행위로 인하여 명령을 받은 임시 직업금지 기간은 이 기간이 보안처분의 근거가 되는 실질적인 확정을 마지막으로 심사할 수 있었던 판결의 고지 이후에 경과된 경우 금지기간에 산입된다. 그러나 행위자가 관청의 명령으로 시설에 감호된 시간은 산입되지 아니한다.

7) 「영국 이사 자격 제한법」에 따라 이사자격이 제한되는 경우는 3가지가 있는바, ① 면책되지 않은 파산의 경우 등 법률 조항상 정해진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회사 이사는 자동적으로 자격이 제한될 수 있고, ② 경쟁법 위반, 부당 거래, 회사와 관련한 비위행위 등으로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이사의 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③ 특정 기간 동안 자격이 제한될 사람 스스로의 신청에 의한 확약에 대하여 국무장관이 승낙 내지 수락을 하면 이사의 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이지영, 영국법상 이사 자격 제한 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23권 2호, p. 231)

「영국 이사 자격 제한법」

제1A조(자격 제한 확약에 대한 일반 규정) ① 제5A조·제7조·제8조·제8ZC조·제8ZE조에 명시된 상황에서 국무장관은 자격제한 확약, 즉 그 확약에 명시된 기간에 그 사람이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는 확약을 수락할 수 있다.

(a) (개별 사안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면, 회사의 이사가 되거나, 회사 재산의 관리인으로 행위를 하거나, 어떠한 방식으로든 회사의 주주모집, 설립이나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거나 참여하지 아니할 것이다.

(b) 파산관재인으로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이다.

② ~ ④ (생략)

제2조(기소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에 따른 자격 제한) ① 어떠한 사람이 회사의 주주 모집, 설립, 경영, 청산 또는 폐쇄와 관련하여 회사의 재산 관리인 또는 회사의 수탁 관리자로 기소 범죄(정식기소 또는 약식기소)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법원은 그 사람에게 자격 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①A 제1항에서, “회사”에는 해외 회사가 포함된다.

②·③ (생략)

제11조(채무불이행 파산) ① 어떠한 사람에게 제2항의 상황 중의 어느 하나가 적용되는 때에 법원의 허가 없이 회사의 이사로 행위를 하거나 회사의 주주 모집, 설립이나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거나 이에 관련되는 것은 범죄이다.

② 그 상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a) 그 사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채무불이행 파산을 한다.

(i) 잉글랜드와 웨일스 또는 스코틀랜드

(ii) 북아일랜드

(b)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라 그 사람에게 대하여 파산제한명령이나 확약이 유효하다.

(i) 「파산법(1985 또는 2016)」(스코틀랜드)이나 「도산법(1986)」

(ii) 「도산명령(1989)」(북아일랜드)

(c)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라 그 사람에게 대하여 채무면제제한명령이나 확약이 유효하다.

(i) 「도산법(1986)」

경우에는 이를 등록부에 등록하고, 이사 자격이 제한되는 기간 동안 이사직을 수행한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게 됨.⁸⁾

다. 취업제한제도의 위헌·합헌론 및 종전 개정안 논의 경과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른 취업제한제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위헌 의견과 합헌 의견이 있음.⁹⁾

위헌론은 재범위험성¹⁰⁾에 대한 판단 없이 일률적으로 취업제한을 하는 것은 헌법상 비례원칙을 위배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ii) 「도산명령(1989)」(북아일랜드)

(d)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라 그 사람에 대하여 채무면제명령에 따른 지급유예 기간이 적용된다.

②A ~ ④(생략)

제9A조(경쟁 자격 제한 명령) ① 법원은 어떠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그 사람에게 자격 제한 명령을 내려야 한다.

② 첫 번째 조건은 회사이며 그 사람이 이 사인 기업이 경쟁법을 위반한다는 것이다.

③ 두 번째 조건은 그 사람이 이사로 한 행위로 인하여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부적격이 되었다고 법원이 판단을 하는 것이다.

④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침해하는 행위에 관련되면 경쟁법을 위반한 것이다.

(a) 제1장 금지(「경쟁법(1998)」)(경쟁을 억제, 제한 또는 왜곡하는 계약 등의 금지)

(b) 제2장 금지(「경쟁법(1998)」)(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

(c) 「유럽연합 기능에 대한 조약」 제101조(경쟁을 억제, 제한 또는 왜곡하는 계약 등의 금지)

(d) 「유럽연합 기능에 대한 조약」 제102조(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

⑤ ~ ⑪(생략)

제10조(부당거래 참여) ① 법원은 「도산법(1986)」 제213조나 제214조에 따라 어떠한 사람에게 회사에 자산을 지원할 책임이 있다고 선언을 하는 경우에 자격 제한 명령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그 선언에 관련된 사람에게 자격 제한 명령도 내릴 수 있다.

② 이 조항에 따른 자격 제한의 최대 기간은 15년이다.

③ 이 조항에서 “회사”에는 해외 회사가 포함된다.

8) 「영국 이사 자격 제한법」

제13조(형벌) 어떠한 사람이 자격 제한 명령이나 자격 제한 확약을 위반하거나 제12조제(2)항, 제12A조 또는 제12B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11조의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다음 각 호에 처한다.

(a) 정식기소에 따른 유죄 판결의 경우, 2년 이하의 금고형이나 벌금 또는 이를 병과(併科)한다.

(b) 약식기소에 따른 유죄 판결의 경우, 6개월 이하의 금고형이나 법정 한도 이하의 벌금 또는 이를 병과(併科)한다.

9) 김정환·홍사운,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제도의 형벌로서의 법적 성격의 규명,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제32권제3호, p109

10) 취업제한의 성격을 형벌로 보는 경우 「형법」상 횡령·배임죄에 대해서는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는데, 자격정지와 유사한 내용의 취업제한이라는 형벌을 추가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의 위배 여부가 문제될 정도로 가중하고 있고, 취업제한의 성격을 보안처분으로 보는 경우에도 취업제한이 보안처분으로서의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재범위험성에 비례하여 취업제한이 이루어져야 한다.(노수환,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규정의 법적 성격에 관한 고찰, 성균관법학 제36권제2호, p.273)

는 입장임.¹¹⁾

합헌론은 징역형, 집행유예 및 선고유예에 따라 취업제한기간을 차등하여 규정하고 있고, 법원이 특정경제범죄자의 재범 위험성 등을 판단한 후 양형하므로 비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입장임.

취업제한 대상기관과 관련된 그간의 개정논의로는 제20대 국회에서 채이배의원 대표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15474호),¹²⁾ 금태섭의원 대표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15544호)¹³⁾ 및 김도읍의원 대표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23065호)¹⁴⁾이 있었음.

1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취업제한제도와 관련해, [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3헌마585 결정] 및 [헌법재판소 2016. 4. 28. 선고 2015헌마98 결정]에서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취업제한을 부과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과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단순위헌결정함에 따라,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법원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면서 이와 동시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되 그 기간을 죄의 경중 및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차등하도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를 개정한 바 있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 25. (생략)

② ~ ⑨ (생략)

12) 특정경제범죄자가 출자하거나 재직하는 등의 기업체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에서 취업제한기업체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음.

13) 특정경제범죄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의 출자금 5% 이상인 기업체를 취업제한기업체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제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음.

14)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의 구체적인 범위를 법률로 상향하되, 이 중 “일정한 범죄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를 제외하는 내용으로, 제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음.

다. 개정안에 대한 검토

1) 특정경제범죄자 출자·재직 기업체 취업제한(안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특정경제범죄자가 출자·재직하는 기업체를 취업제한기업체로 규정하여 경제범죄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공감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다음 사항에 대한 추가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첫째, 현행 체계상 특정경제범죄자의 재범 가능성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취업제한기관에 취업을 제한하고 있는바, 개정안이 이에 더하여 특정경제범죄자가 출자하거나 재직하는 기업체¹⁵⁾까지 일률적으로 취업을 제한할 경우,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특정경제범죄자의 직업선택의 자유¹⁶⁾를 침해할 소지는 없는지

15)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제2항에서 특정경제범죄를 저지른 자 및 그 자가 대표자·임원인 기업체에 대하여 취업제한기간 동안 관허업의 허가 등을 받을 수 없게 하는 등의 제재규정을 두고 있음.

제14조(일정 기간의 취업제한 및 인가·허가 금지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규정된 사람 또는 그를 대표자나 임원으로 하는 기업체는 제1항 각 호의 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허업(官許業)의 허가·인가·면허·등록·지정 등(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⑥ (생략)

16) 헌법재판소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하여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이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된 것) 제56조 제1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하였음(헌법재판소 2016. 4. 28. 선고 2015헌마98 결정).

이에 따라 2018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이 개정되어,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면서 이와 동시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서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고, 그 기간을 죄의 경중 및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차등하도록 하였음.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개정안은 현행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와 달리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출자 또는 재직하는 기업체”의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지 않아, 특정경제범죄자의 출자 비율이나 재직하는 기업체에서의 직위 등을 고려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취업을 제한하게 됨. 이는 침해의 최소성 원칙 및 법익 균형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재범 위험성, 경제범죄의 재발 방지 필요성, 출자 비율이나 재직하는 기업체에서의 직위 등을 고려하여 취업 제한대상 기관의 범위를 법률에서 제한하거나 그 대강을 정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사실상 취업 제한(안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개정안은 ‘취업’의 범위에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등 사실상 취업한 경우”를 포함함. 이는 특정경제범죄자가 취업제한기업체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다만, 개정안은 다음 사항에 대한 추가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첫째, 취업은 사전적으로 ‘일정한 직업을 잡아 직장에 나감’을 의

미하고,¹⁷⁾ 성범죄자 및 학대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제도를 두고 있는 유사 입법례에서는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바,¹⁸⁾ 이러한 사전적 의미 및 유사 입법례와 비교할 때 ‘취업’은 급여 또는 비용 지급의 다과에 상관없이 유상으로 근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¹⁹⁾ 개정안은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를 “사실상 취업”의 예시로 규정하여 업무를 ‘무상으로’ 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바, “사실상 취업”의 의미가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의 법감정에 비추어 명확한지 검토가 필요함.

둘째, 개정안은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를 “사실상 취업”의 예시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17)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18)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6. (생략)

② ~ ⑦ (생략)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5. (생략)

② ~ ⑨ (생략)

19) 이승준, 기업범죄에 대한 새로운 형사제재의 도입가능성, 형사정책연구 제29권 제2호, p.80

행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해당 기업체 관련 업무가 포괄적으로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해당 기업체의 주주인 특정경제범죄자의 주주로서의 권리²⁰⁾ 행사도 제한되어 그 재산권 행사가 지나치게 제한될 소지가 있는 점에서 “사실상 취업”의 범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3) 취업제한기간 명확화(안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현행 규정은 징역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특정경제범죄자의 취업제한기간을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제14조제1항제1호)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같은 항 제2호)으로 규정하여 ‘형 집행기간’과 ‘집행유예기간’이 취업제한기간에 포함되는지 불명확하다는 의견²¹⁾ 등이 있는 점에서 취업제한 기간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다만, 취업제한제도와 유사하게 형사처벌을 이유로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격사유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취업제한기간을

20) 주주의 권리는 주주의 재산적 이익을 위하여 인정되는 자익권과 개인의 이익 뿐만 아니라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행사하는 권리인 공익권으로 구분되며, 자익권으로는 이익배당청구권(「상법」 제462조), 중간배당청구권(같은 법 제464조의2제2항), 신주인수권(같은 법 제418제1항), 주식매수청구권(같은 법 제360조의5제1항), 잔여재산분배청구권(같은 법 제538조) 등이 있다. 한편, 공익권으로는 의결권(같은 법 제369조제1항), 재무제표 열람청구권(같은 법 제466조), 각종 주주소송에 관한 권리(같은 법 제403조, 제542조의6제6항 등), 3%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같은 법 제363조의2제1항), 회계장부열람권(같은 법 제466조제1항), 이사의 해임청구권(같은 법 제385조제2항), 임시총회 소집청구권(같은 법 제366조제1항) 등이 있다

21) 2019. 11. 21. 제371회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록 제1호. p.23

○ 법무부차관 김오수 “집행유예기간 중에 취업을 할 수 있으나, 아니면 복역 중에, 형 집행 중에 취업할 수 있느냐가 불분명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함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i) 현행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은 취업제한대상자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취업제한기간의 시기(始期)는 ‘유죄판결을 받은 때’로 보고, 같은 항 각 호는 취업제한기간의 종기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점,²²⁾ ii)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기까지의 기간에는 “징역형의 집행기간”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어 중복²³⁾적인 표현이라는 점, iii) “집행이 종료”되는 경우와 관련하여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보는 경우’²⁴⁾를 포함할 필요가 있는 점, iv)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는 경우와 관련해서는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로서 ‘형의 집행이 면제되는 경우’²⁵⁾를 포함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마찬가지로 집행유예의 경우에도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되기까지의 기간에는 “집행유예기간”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점²⁶⁾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2)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두44354 판결

23)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기까지의 기간에 “징역형의 집행기간”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에는, 별도로 “가석방기간”도 취업제한기간에 포함되도록 명시하여야 함.

24) 집행 종료 간주의 예

- 가석방 기간이 경과한 경우(「형법」 제76조)

25) 집행면제의 예

-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형법」 제1조제3항)

- 재판확정 후 시효가 완성된 경우(「형법」 제77조)

- 특별사면의 경우(「사면법」 제5조제1항제2호)

26)[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두44354 판결]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은 취업제한기간의 종기를 규정한 것이고, 집행유예기간은 취업제한기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함.

※ 결격사유 관련 입법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2. (생략)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 8. (생략)

4) 신·구법률의 시간적 적용범위(안 부칙 제2조 관련)

취업제한기업체를 확대하고 사실상의 취업을 제한하는 개정규정(안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과 관련하여 신·구법률의 시간적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부칙을 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²⁷⁾

다만, 개정규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에 개정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명확한 반면, 개정규정 시행 전에 특정경제범죄를 저질렀으나 개정규정 시행 이후에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신·구법의 적용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점에서, 개정규정 시행 전에 특정경제범죄를 저지른 자의 구법에 대한 신뢰이익을 보

27) 취업제한제도의 성격과 시간적 적용범위

① 취업제한제도를 형벌로 보게 되면(형벌로 보는 견해의 논거는 김정환·홍사운,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제도의 형벌로서의 법적 성격의 규명, 형사정책 제32권제3호, p.113 이하 참조) 「형법」 제1조제1항에 따라 행위시법이 적용되어야 하나, ② 취업제한제도를 보안처분으로 보게 되면 장래의 위험성을 근거로 재판시법을 적용할 수도 있는 점(보안처분에 대한 재판시법 적용을 긍정한 판례로는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703 판결, 헌법재판소 2012. 12. 27. 2012헌가82 결정이 있음)에서 개정규정의 시간적 적용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호하기 위한 경과조치를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²⁸⁾

정리하면,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특정경제범죄자의 취업제한기업체를 확대하고 사실상의 취업까지 제한함으로써 경제범죄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긍정적 측면과 함께, 특정경제범죄자 출자·재직 기업체를 일률적으로 취업제한기업체로 규정함에 따른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가능성, 제한되는 사실상 취업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 등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056

28) [헌법재판소 2012. 12. 27. 2010헌가82와 2011헌바89; 2015. 9. 24. 2015헌바35 등]에서 **보안처분은 형벌과 달리** 행위자의 장래 위험성에 근거하는 것으로 행위자가 아닌 재판시의 재범 위험성 여부에 대한 판단에 따라 결정되므로, 원칙적으로 재판 당시 **현행법을 소급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함. 다만, 보안처분이 설사 형벌이 아니어서 **형벌불소급원칙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보안처분의 선고와 관련하여 당사자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하며, 신뢰보호원칙은, 원칙적으로 절대효를 가지며 다른 가치와의 이익형량자체를 허락하지 않은 형벌불소급 원칙과 달리 다른 가치들과의 이익형량을 통해 그 위배 여부가 결정된다. (장진환, 보안처분의 재범위험성 판단시기에 대한 입법론 연구, 형사법연구 제33권제3호, p.74)